

2023학년도

생활관 생활수칙
(학위과정)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생활관 수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입소생 수칙은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생활관 규정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쾌적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및 생활수칙)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소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 한다.

입소자는 생활관 입소생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출입시간 및 인원점검 시간)

입소자는 생활관의 지정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생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문 및 인원점검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② 중간, 기말고사, 학교 공식행사 기간인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 후 연장할 수 있다.

제 2장 입소 자격 및 선발

제4조(입소자격)

- ① 신입생 및 재학생
- ② 정규학기 등록자

제5조(입소제한대상자)

- ① 생활관에서 입소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② 휴학 중인 자
- ③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 ④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제6조(입소생선발)

- ① 장애우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을 우선 선발 한다.
- ② 신입생의 경우 원거리 순으로 선발한다.
- ③ 재학생은 거리60%, 성적40%를 반영하여 선발, 동점자인 경우 별점부여자를 배제한다.

제7조(호실 및 룸메이트)

- ① 학기 및 방학 중 입소에 따른 호실배정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정한다.
- ② 배정된 호실은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 ③ 지체부자유자가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호실을 배정한다.
- ④ 룸메이트 지정은 생활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소생이 신청 하거나 임의 배정할 수 있다.
- ⑤ 룸메이트 퇴소시 호실 이동 또는 임의 재배정 될 수 있다.

제 3장 재정

제8조(생활관비 및 보증금)

- ① 입소생은 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한에 생활관비(공과금 포함)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는 등 별도의 재원이 있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정된 등록기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활관 입소가 취소되며 자연 퇴소한다.
- ③ 모든 입소생은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증금을 입소 전 납부하며, 보증금은 정상퇴소시 호실 청소상태, 비품 유무, 기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용료를 제하고 지정계좌로 환불한다.
- ④ 중도 퇴소(과정 포기, 학기중 휴학 등 과정 종료 이전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퇴소), 무단 퇴소 및 징계 등으로 인한 강제 퇴소시에는 보증금 및 잔여 생활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항목	금액(원)	환불내역	
		환불시기	시설 확인 후 최대 환불금액
생활관 사용보증금	500,000원	정상퇴소 후 2주 이내	500,000
비품 사용료	60,000원	대상아님	
※ 비품 사용료는 호실별 TV, 인터넷, 냉장고, 전자렌지 등의 편의 비품 사용료로 선납하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보증금 입금 계좌	(하나은행) 357-910027-03304 (예금주) 서울현대교육재단		
※ 생활관 보증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환불 가능(시설확인 필)			
퇴실시 확인 후 비용 부과항목			
항 목	비 용	비 고	
시설	원상 복구 실비용	벽지, 가구, 비치품, 기물 등 파손품목의 원상복구비	
환경정리	100,000원의 처리 비용	개인물품 잔존시 부과/임의처리	
카드키	20,000원	미반납시 부과	
실내흡연	300,000원	실내 흡연시 벽지 교체 비용 실비 청구	

제9조(생활관비)

- ① 입소생 납부금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설	1개월 기준	기준 개월	납입 비용
1인실	700,000원	6개월	4,200,000
2인실	400,000원	6개월	2,400,000
생활관비 입금 계좌		(하나은행) 357-910027-03304 서울현대교육재단	

- ② 납부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③ 입소생은 생활관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거소시설이 아닌, 학습을 위한 지원 시설임을 인식하고 그 시설이 원활히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생활관은 2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 퇴사자 발생시 임의로 호실을 조정하며 입소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생활관비의 환불)

- ① 입소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종강 후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학기중 4개월, 방학 2개월)
- ② 생활관 보증금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환불이 가능(시설확인 필)하며, 중도 무단 퇴소(퇴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퇴소) 및 징계 등으로 인한 강제 퇴소시에는 보증금 및 잔여 생활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⑥ 퇴소생은 보증금 확인 절차(보증금 입금, 시설담당, 카드키반납, 환경정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인 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환불신청서와 함께 학생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면 교무처에서는 퇴실 일자에 따라서 잔여 생활관비를 정산하여 환불신청서

제출 2주 이내에 절차에 따라서 환불을 진행한다.

- ⑦ 퇴실 시 개인물품 잔존시 부과(임의처리비용 100,000원)되는 비용 및 실내 흡연시 벽지 교체 비용 (400,000원)이 청구될 수 있으며, 청소상태, 비품 유무, 기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 후 손실금을 이용료를 제하고 지정계좌로 환불되므로 입실 기간 동안 사용상의 주의를 요한다.

제 4장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11조(보건위생 및 청결)

- ① 입소생은 생활관입소를 위한 건강진단확인서(결핵, 간염 포함/음성 진단, (입실 전 5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및 코로나19 검체검사결과(음성, 입실 전일 실시한 사진 촬영)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소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감염성 질병의 경우 완치 시까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③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 ④ 생활관내에서의 취사 및 취식 행위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 ⑤ 입소자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제한)

- ① 입소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입소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13조(외박)

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외박신청서에 귀가일시 및 목적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입소생은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호실 내에서의 흡연, 음주, 폭행, 도박행위
- ② 외부인 출입 및 숙식 제공 행위
- ③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④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못 밖는 행위등 시설물 임의 이동행위
- ⑤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 ⑥ 생활관 애완동물의 사육 금지
- ⑦ 이성의 호실이 위치한 층을 방문하거나, 호실에 방문하는 행위
- ⑧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5조(안전관리)

- ① 입소자는 호실의 화기단속 및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화기제품의 사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 ③ 관리자의 확인 후 허가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위험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확인허가된 물품 이외는 적발시 벌점 부여 및 압수할 수 있다.
- ④ 호실 안에서 귀중품, 현금, 고가품 등 개인용품의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⑤ 입소자가 호실을 모두 비울 때는 문과 창문을 잠그는 등 모든 안전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점호)

- ① 점호의 목적은 생활관 내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② 정기 점호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인원 점검 및 시설 점검이 함께 이루어지며, 사감은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호실에 입실하여 확인한다.

대 상	시 간	비 고
고교위탁	22시~23시	
학위과정	23시~24시	

- ③ 특별 점호는 필요에 따라 생활관장 지도하에 실시하며 청소상태, 취사행위, 전열기기 사용여부, 위험물 반입여부 등 호실점검을 중점 실시 할 수 있다.
- ④ 호실점검에 있어 입소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호실 내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이 부과 된다.
- ⑤ 생활관장이 지정한 자는 시설 점검과 확인 또는 안전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임의의 시간에 호실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입소생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⑥ 점호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점후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는 점호시 부재, 연락 두절, 사전 신청한 점호 지연 시간 이후 점호 참석 등 원활히 점호에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점호 불참	조치사항
1일	입소자에게 문자 통보
2일~4일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통보
5일	운영위원회 회부
※ 지속적인 점호불참 등 상기 상황에 따라 퇴실 조치 발생시 보증금 환불이 불가하며, 호실 내 개인 소지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음	

제17조(행정절차 및 지시사항 준수)

- ① 입소자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행정절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는 생활관 행정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 5장 벌점 및 제재

제18조(벌점)

- ① 입소자의 생활관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② 부과된 벌점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소에 적용한다.

제19조(제재) - (제21조-강제퇴소처분 및 벌점기준표 참조)

- ①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벌점을 받은 입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 강제 퇴소와 더불어 다음 학기 또는 재학 중 입소 불허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
 - 누적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 일시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
- ② 사감은 입소생의 중대 사안의 발생시 생활관 운영위원회 소집을 건의할 수 있으며,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입소생의 중대 사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칙을 현격히 위반하여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입소생으로서 학업성취 의욕이 없거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장 퇴소

제20조(중도퇴소 및 퇴소신청)

- ① 정규퇴소자는 지정일까지 퇴소하여야 한다.
- ② 중도퇴소자는 본인이 신청한 퇴소일까지 퇴소하여야 한다.(15일 전 취소)
- ③ 강제퇴소 처분을 받은 자는 퇴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관장은 그 사유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강제 퇴소의 경우 생활관비 및 보증금의 반환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1조(퇴소절차)

- ① 퇴소자는 호실점검 및 카드키 반납 등 퇴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퇴소이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내에 개인물품 등 잔여물건이 남아있는 경우 생활관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퇴소시 호실 점검 후 시설 파손 등의 사항에 따라 보증금액에서 차감 후 반환한다.
만약 파손물의 비용이 반환보증금을 넘을경우 차액을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퇴소 당일 시설 및 물품 점검확인 후 퇴소하며, 점검은 학생본인(보호자), 시설관리자, 사감 동행하에 진행된다.

제22조(강제퇴소처분 및 벌점기준표)

가)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를 강제퇴소 처분할 수 있다.

- ① 생활관비 미납자
- ②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 ③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④ 휴학 중인자
- ⑤ 입소지원서 및 결핵검진서 허위 제출자
- ⑥ 벌점기준표에 따른 퇴소 대상자
- ⑦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나) 강제퇴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다) 강제퇴소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벌점기준표

벌점/벌금 항목	내용
강제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	① 절도, 폭력(폭언 및 폭행), 도박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행위 ③ 생활관 카드(열쇠) 대여, 무단복제, 양도 행위 ④ 생활관내에서 음주 행위 ⑤ 반려동물 사육행위 ⑥ 생활관 내 시설물 고의 파손 행위 ⑦ 배정된 호실의 임의 변경이나 묵인한 행위
벌금	① 실내 흡연시 해당 호실에 30만원 ②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기기 사용 시 10만원 ③ 등교시 전기, 수도 등 안전관리 미비시 1회당 호실별 3만원 부과 (예: 전등 소등, 에어컨 중지, 수도 잠금 등) ④ 외부인의 생활관 호실 내 숙박 행위시 전원 10만원 ⑤ 과정 종료 후 퇴실시 집기 파손 점검하여 파손에 대하여 실비 부과하며, 개인 비품 잔존시 처리비용 부과 ◆ 벌금은 고지 이후 1주일 내 납부하며, 미납시 학부모/학교 통보 및 가산금 부과
벌점 5점	① 생활관장 또는 사감 등 지도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손 행위 ② 생활관 내 소음/소란 등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카드키 분실, 파손 ④ 허가없이 외부인 대동입실, 임의 외박, 타호실 및 타 층으로 이동하는 경우
벌점 3점	① 소지 불가 물품의 소지

	② 호실 청소 불이행 또는 비품의 무단 이동 ③ 사용시간 외에 생활관 시설물 이용 행위 ④ 휴지, 담배꽂초 등을 지정되지 않은 곳에 버리는 행위 ⑤ 기타 제반 입실생 수칙 위반 행위
기타항목	① 생활관 수칙 위반을 목인한 행위는 별점 수위에 따라 조치 ② 입소생수칙에 위반 된 물건 적발 시 압수(퇴실시 반환)

제 7장 부대시설 이용

제23조(부대시설 이용)

입소생은 생활관내 설치된 부대시설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다.

제 8장 응급환자 및 긴급사태

제24조(응급환자)

입소생중 환자 발생 시 이를 발견한 입소생은 즉시 생활관장 또는 직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입소생은 방송 및 생활관장 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26조(배상책임)

생활관 사용시 입소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벽지손상 및 바닥오염) 및 카드키 분실등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27조(입소생 자격의 취득)

생활관 입소생과 보호자는 본 수칙을 반드시 읽고, 내용에 대한 충실한 준수를 서약함으로써 입소생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28조(수칙의 적용)

본 수칙은 2023년 3월 2일 기준안이며, 개정 사안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및 문서로 입소생에게 수정 사안을 고지 시행한다.

* 제출서류는 입소 할 때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활관 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 및 보호자는 본 수칙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며, 생활관 이용 중 충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귀책에 의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책임 질 수 있음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서약자(입소자)

입소자 성명		서명	
전공명			
생년월일			
원적교(해당자)			
주 소			
생년월일		전화	010-

보호자

보호자 성명		서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	010-

2023년 월 일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생활관장 귀하